

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 
사회보장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,

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 제1부 일반규정

### 제1조 정의

#### 1.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

가. “체약당사자”란 대한민국 또는 필리핀공화국(이하 각각 “한국” 또는 “필리핀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나. “국민”이란

- 1) 한국에서는 「국적법」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,
- 2)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법에 정의된 필리핀 국민을 말한다.

다. “법령”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.

라. “권한 있는 당국”이란

- 1)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,
- 2) 필리핀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사회보장청장과 공무원보험청장을 말한다.

마. “권한 있는 실무기관”이란

- 1)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,
- 2) 필리핀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사회보장청과 공무원보험청을 말한다.

바. “가입기간”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거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.

사. “급여”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.

2.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.

3. 양 계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모든 변경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한다.

##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

1. 이 협정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적용된다.

가. 한국에서는 「국민연금법」

나. 필리핀에서는

1) 퇴직, 장애 및 사망 급여에 관한 「2018년 사회보장법」

2) 퇴직, 장애, 사망 및 유족에 관한 「1997년 공무원보험법」

3) 1)목과 2)목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합산하는 것에 관한 「합산법」

2.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계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.

3.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, 보충,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.

4.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,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않는다고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,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## 제3조

## 인적 범위

이 협정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과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안에서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.

### 제4조

#### 동등 대우

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한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계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. 앞의 규정은 이 조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해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.

### 제5조

#### 급여의 국외지급

1.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, 변경, 정지,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으며, 그 급여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.

2.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그 영역에 부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.

3.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계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계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.

##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

### 제6조 일반규정

1.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.

2.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, 그 근로와 관련하여, 그 한쪽 계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.

3. 양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이나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계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.

### 제7조 파견근로자

1.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, 그 근로자가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. 이 항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.

2.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, 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상호 동의하에 36개월까지의 추가 기간 동안 같은 항에서 언급된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.

##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

1.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고용에 관해 양 계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계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.

2.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계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.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를 두는 경우,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에 의해 고용되고 이 협정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계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.

## 제9조 외교공관원, 영사관원 및 공무원

1.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「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」이나 1963년 4월 24일자 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」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2.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, 한쪽 계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은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.

## 제10조 수정규정

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, 해당되는 사람이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을

적용받는 경우 이 협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또는 수정을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.

### 제3부 급여 규정

####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

1.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,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,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.

2.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해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,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수급권의 인정을 위해 합산된다.

3.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합산되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,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, 그 제3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, 합산하여 결정된다.

#### 제12조 급여의 산정

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.

##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

1.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해 필리핀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, 급여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된다.

가.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.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.

나.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,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.

2. 이 협정 제11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수급권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, 같은 항에 언급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1항의 적용에 고려된다.

3.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필리핀 국민에게 지급된다.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,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.

4. 어떠한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축적한 가입기간의 총합이 1년 미만이고,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,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사람에게 그 기간에 대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.

## 제14조 필리핀에 관한 특별규정



1. 어떠한 사람이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해서는 급여 지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나 이 협정 제11조에 규정된 합산을 통해 급여 지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,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지급 가능한 급여액을 산정한다.

가.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필리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 필리핀 법령에 따라 지급 가능한 이론상 급여액을 우선 결정한다.

나. 그 다음에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필리핀 법령상 급여수급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총 기간에 대한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으로 나타나는 분수에 그 이론상 급여를 곱한다.

2. 어떠한 사람이 필리핀 법령에 따라 축적한 가입기간의 총합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,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사람에게 그 기간에 대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.

#### 제4부

#### 보칙 규정

#### 제15조

#### 행정약정

1.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.

2. 각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.

#### 제16조

####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

1.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,

가.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.

나.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지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. 그리고

다.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.

2.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이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.

## 제17조

### 정보 보호

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.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한 그 계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.

## 제18조

###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

1.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,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

도 적용된다.

2.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.

3.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.

## 제19조

### 소통 언어

1. 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,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. 교신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.

2.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## 제20조

### 청구서,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

1.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 목적상 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,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

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.

2. 이 협정의 발효 후, 어떠한 사람이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, 그 신청은 급여 신청 시 그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면 다른 쪽 계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.

가.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, 그리고

나.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, 또는

다. 다른 쪽 계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다만, 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3.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, 청구서,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.

## 제21조

### 급여의 지급

1.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계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.

2. 한쪽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,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, 그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이 협정 제3조에 기술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.

## 제22조 분쟁 해결

1.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.
2.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.

##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

### 제23조 경과 규정

1.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. 그러나 어느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.
2.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.
3.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4.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 경우, 그 급여는 신청에 따라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.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어떠한 감소도 초래하지 않는다.
5.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이 협정 제7조를 적용할 때, 같은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
6. 이 협정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## 제24조

### 발효

이 협정은 각 계약당사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.

## 제25조

### 존속기간 및 종료

1. 이 협정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.

2.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,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. 양 계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.

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9년 11월 25 일 부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